

국토교통부훈령 제 1686 호

「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1308호, 2020.8.1.)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
2023년 12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본 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(제2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 1686 호

**「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
규정」 일부개정**

「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(유효기간)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6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